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(제19조제3항 관련)

1.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

구분	지원기준	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	
는 연구개발기관		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	
는 연구개발기관		
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	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	
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		

2.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

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.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.

구분	현금부담 비율
가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
는 연구개발기관	
나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
는 연구개발기관	
다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
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	

- 3.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.
 - 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
 - 나. 연구시설 · 장비비
 - 다. 기술도입비 · 연구재료비
- 비고: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 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. 다만, 사회·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

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.